

輸入開放化 時代와 産業被害救濟制度

南 忠 祐 / 商工部 貿易調查官

최근 우리의 經濟는 수출의 好調에 힘입어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86년에는 처음으로 經常收支의 흑자를 示顯하였다. 이렇듯 우리의 經濟事情이 좋아짐에 따라 주요 交易相對國으로부터 우리나라의 市場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로서도 앞으로의 지속적 輸出伸張과 經濟發展을 위해 보다 폭넓게 國內市場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그 동안 꾸준히 輸入自由化의 擴大('88년 95.3%)를 추진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輸入制度를 살펴볼 때 수출입기별공고, 輸入監視制度 등 사전적 輸入管理制度의 적절한 이용으로 國內産業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또는 불요불급한 消費財에 대해서는 輸入을 事前에 규제하여 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인한 國內産業의 피해는 매우 輕微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市場 開放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종전과 같은 방식의 輸入規制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한편, 國民所得이 증대되고 經濟規模가 확대됨에 따라 國民生活 수준의 향상과 福祉欲求의 증대로 輸入의 규모가 확대되고 수입의 내용도 全品目에 걸쳐 다양하게 表出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輸入으로 인한 國內産業에 처한 피해도 여러 部門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輸入開放이라는 經濟물결이 현재 우리 經濟와

件으로 볼 때 불가피하다면, 輸入開放 자체에 대해서만 매달려 두려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며, 오히려 衆智를 모아 당당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對策으로는 무엇보다도 先進 各國에서도 有效適切하게 활용하고 있는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外國과 國內 産業被害救濟制度의 현황을 깊이있게 研究·分析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장기적이고 根本的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方向 設定은 앞으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國際經濟 여건의 변화로 우리나라 國際收支가 다시 赤字로 반전될 때를 대비해서도 충분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産業被害 救濟制度의 發展에 관한 論議와 관련하여 提起되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現時点에서 産業被害救濟制度의 일환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輸入制限, 関稅引上, 産業지원 등 救濟手段을 발동했을 때 우리나라 交易相對國에서 과연 이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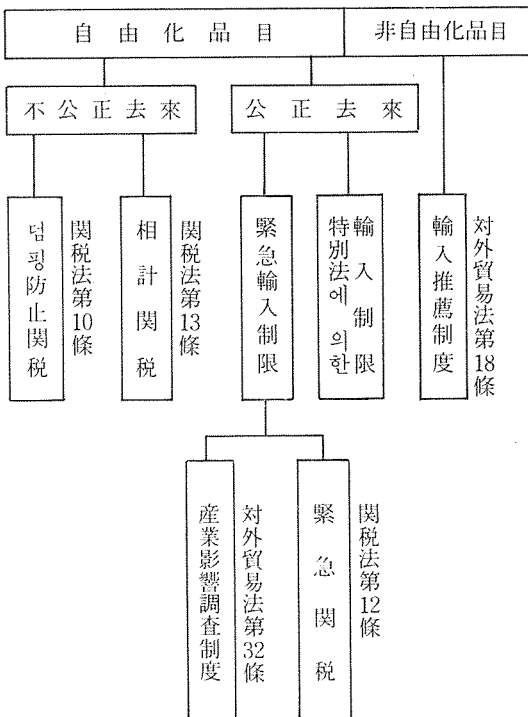
이러한 諸般事項을 고려할 때 現行 産業被害救濟制度를 國際社會에서 通用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制度로 시급히 정비하여 우리도 美國, EC, 캐나다, 濠洲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公開的이고 公正한 民主的인 절차를 통해 우리 産業을 몇몇하고 의연하게 보호한다면 우리만 일

방적으로 交易相對國으로부터 당하기만 하는 언센스는 앞으로 払拭될 것으로 기대된다.

輸入의 증가는 그것이 公正去來(Fair Trade)에 의해서건, 不公正去來(Unfair Trade)에 의해서든지를 막론하고, 國內産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과 관련하여 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制度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自由貿易主義에 기반을 두고 있는 美國 등 선진국에서는 不公正하거나, 또는 급격한 輸入의 增加로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事後的으로 보호하는 制度가 발전되었고, 開途國에서는 有望·幼稚産業의 保護, 국제수지 방어 및 物價安定 등을 목적으로 한 事前的 輸入管理制度가 발달되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中進國에서는 종전의 事前的 輸入管理制度로부터 先進國型的 事後的 輸入管理制度로 轉換시켜가는 관점에서 輸入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制度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表 1. 우리나라의 輸入管理制度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不公正貿易去來(여기서는 덤핑 및 補助金에 의한 價格操作을 말한다)에 대한 輸入管理制度로 덤핑방지 관세와 相計關稅 등 관세조치를 설치·운용하여 왔고 公正貿易去來에 대한 輸入管理制度로서 輸出入期別公告, 輸入監視制度,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非關稅 措置를 활용하여 왔다.

不公正去來에 의한 産業被害救濟를 위한 關稅 措置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 불가피성이 널리 認定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한 制裁手段 및 절차에 대해서도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한편, 1986年 3월에 종전의 關稅法 중 덤핑 등 관련규정을 GATT 규정과 거의 유사하게 改正하고, 1986年 3月 GATT 반덤핑 Code에 가입함으로써 일단 國際의 正當性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덤핑 및 補助金を 받고 輸入되는 것에 대한 産業피해의 調査·判定 및 구제조치와 같은 機能을 담당하도록 財務部에 關稅審議委員會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公正貿易去來에 의한 産業被害救濟를 위한 수출입기별공고, 輸入監視品目, 수입선다변화 등 非關稅 措置의 경우 수입의 許可나 承認 등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開途國型 輸入管理로서 제도의 주요목적이 産業被害救濟에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우기 法的 根拠 또는 절차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조치의 타당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比重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그러한 制度를 國際貿易去來에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國際적으로 타당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對外貿易法(1086. 12. 31 공포)의 제정시 公正貿易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制度를 新設하였고, 輸入急增 또는 過多輸入에 대한 産業피해의 調査·判定 및 구제조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도록 貿易委員會(Korean Trade Commission : KTC)를 商工部에 1987年 7月 1日자로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는 不公正貿易에

대한 制度와 公正貿易에 관한 것으로 区分될 수 있는데,

첫째, 不公正貿易에 대한 産業被害救濟制度로서는 反덤핑 關稅와 相計關稅를 들 수 있다. 그런데 反덤핑 關稅와 相計關稅는 발동의 기본 사항이 다를 뿐 그 절차와 運用은 거의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反덤핑 關稅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相計關稅에 대해서는 그 差異點만을 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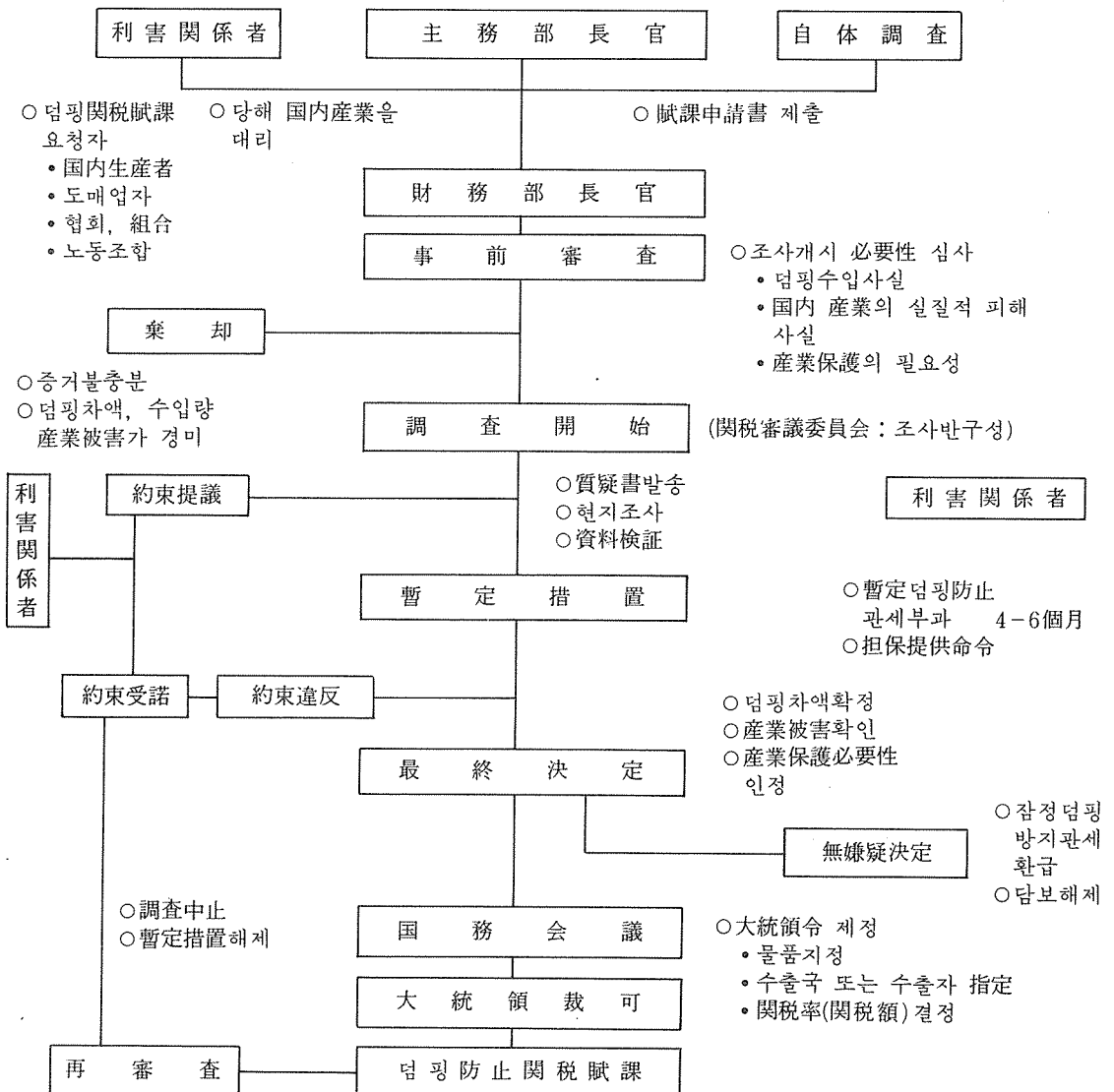
히 記述하기로 한다.

反덤핑 關稅(Anti-dumping Duty)는 關稅法 제10조, 同施行令 제 4 조의 2, 제 4 조의 7, 제 4 조의 17에 規定되고 있고, 1986年 3月 동 施行令 제 4 조의 2 를 改正·擴大하여 제 4 조의 2 부터 제 4 조의 7 까지 具體적으로 規定되어 있다.

그 主要内容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表 2. 反덤핑 關稅 · 相計關稅 發動節次

이러한 反덤핑 關稅 발동절차는 關稅法 施行令 제 4 조의 13에 의하여 關稅 관련된 용어만 변경하여 相計關稅 발동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됨.



- 発動要件：“외국에서 正常價格 이하로 판매되는 物品의 輸入으로 국내산업이 實質의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国内 産業開闢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国内 産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認定될 때”
- 提 訴：法 제10조(2), 施行令 제 4 조 의 2
- 調 査：法 제10조(3), (4), (5), (6)
- 덤핑의 決定：施行令 제 4 조의 3, 4
- 被害의 決定：施行令 제 4 조의 5
- 暫定措置：法 제10조(7), (11)
- 約 束：法 제10조(8), (9), (10), 施行令 제 4 조의 6, 7
- 再 審 査：施行令 제 4 조의 7
- 關稅審議委員會：法 제10조(3), 施行令 제 4 조 의 17

그리고 相計關稅(Countervailing Duty)의 근거법은 關稅法 제13조, 同施行令 제 4 조의 13이다. 그런데 相計關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규정한 關稅法 제13조(1)항, 約束에 대해 규정한 關稅法 제13조(3)항, 暫定措置에 대해 규정한 關稅法 제13조(4)항을 제외한 余타 규정은 ‘關聯된 用語’만 변경하여 反덤핑 關稅法을 准용하고 있다. 즉 “덤핑된 것”을 “補助金 등을 支給받을 것”으로 고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相計關稅와 反덤핑 關稅의 發動節次는 (表-2)와 같다.

둘째로, 公正貿易(Fair Trade)에 대한 産業被害救濟制度는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를 들 수 있다. 이 制度는 外國에서 수입되는 物品이 덤핑이나 補助金을 받지 않고 正常價格으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国内産業의 生産, 고용, 판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利害当事者가 상공부 貿易委員會(KTC)에 제소하여 被害救濟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 被害救濟 手段으로는 輸入數量 또는 品質의 制限, 技術 및 生産性 향상의 지원 등이 있다.

同制度는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對外貿易法 제32조 내지 제43조, 同施行令 제64조 내

지 제78조에 規定되어 있으며 細部規定으로는 수입에 의한 産業影響調查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공부고시 제87-33호, '87. 8. 6) 및 貿易委員會(KTC)의 심의·議決節次 등에 관한 규정(상공부고시 제87-23호, '87. 8. 10)이 制定되어 있다.

그 主要内容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 發動要件：“특정한 物品의 급격한 輸入의 增加 또는 과다한 수입으로 인하여 同種의 物品 또는 직접적인 競争關係에 있는 物品을 生産하는 国内産業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沮害될 우려가 있을 때”
- 提 訴：法 제32조, 施行令 제64, 65조
- 調 査：法 제33조, 施行令 제66, 67조
- 被害의 判定·救濟措置：法 제34조, 施行令 제 69조
- 暫定措置：法 제35조, 施行令 제72조
- 再 調 査：施行令 제70조
- 年例 檢討：施行令 제71조
- 貿易委員會：法 제37조 내지 法 제43조, 施行令 제74조 내지 제7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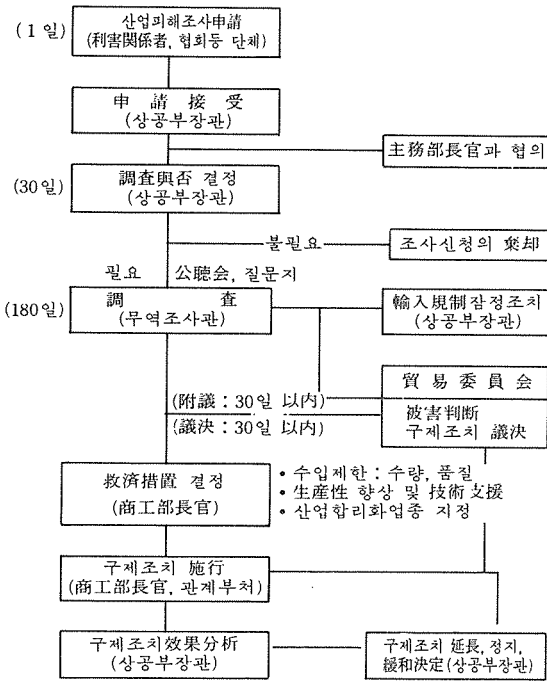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의 發動節次는 다음(表-3)과 같다.

輸入으로 因한 産業被害救濟制度는 국가마다 시대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나 그 중 가장 잘 발달되어온 國家는 美國, 캐나다, EC, 濠洲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國家가 世界貿易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美國의 ITC, 캐나다의 CIT, EC 執行委員會, 호주의 IAC 등의 政府機關에서 이 制度를 運用하고 있으며 특히 美國의 ITC는 1916년에 설립되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 다양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美國의 ITC는 公正貿易과 不公正貿易에 대한 産業被害 調査·判定業務뿐만 아니라 貿易, 關稅 問題들에 대한 調査·研究 등에 대해서도 관장하고 있으며 470名이라는 인원과 방대한 기구로 조직되어 있는 大統領直屬의 準司法的 獨立機關 이다.

貿易黑字가 계속되어 왔던 캐나다 政府는 새

表 3. 對外貿易法上 산업피해조사 및 被害判定 절차도



*복잡한 경우 180일 이내 調査期間 延長 가능.

로운 産業被害救濟機關 설립을 위한 법안을 최근 議會(下院)에 제출했다. 캐나다 國際貿易委員會(Canadian Int'l Trade Tribunal:CITT)로 명명될 이 機構는 기존의 기구 즉 輸入審査委員會(CIT), 직물의류위원회(Textile & Clothing Board), 關稅委員會(Tariff Board)의 機能을 통합한 것으로 美國 ITC와 같은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계획이다.

또한 貿易黑字로 몸살을 앓고 있는 自由中國 조차도 최근의 관세인하에 따라 야기될지도 모를 과도한 輸入增加에 대처키 위해 關稅를 인상하고 輸入規制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貿易法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외국수출업체의 不公正貿易 去來事例 등을 제소할 수 있는 “貿易調査委員會”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뉴스는 단지 公正貿易에 대한 産業被害救濟制度(Safeguard)만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貿易委員會(KTC)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示唆點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制度를 위해 설립한 貿易委員會(KTC)가 例外的으로 發動되어야 하는 S-afeguard 조치만을 遂行하는 절름발이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美國, 캐나다의 경우 덤핑, 補助金을 받고 수입되는 不公正貿易에 대해서는 주로 産業被害救濟措置를 發動하고 있는 바 이것이 國際的인 관례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正常價格으로 수입되는 公正貿易에 대한 제재조치보다는 正常價格 이하로 수입되는 不公正貿易에 대해 輸入規制措置를 주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論理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財務部(關稅審議委員會)에서 덤핑(補助金支給)與否 調査·判定을 關장하고 KTC가 不公正貿易에 대한 産業피해 調査를 분담하여 담당하는 것은 그 設立趣旨 및 存立目的에 합치되는 것이다.

市場開放壓力에 따른 輸入自由化로 인해 國內産業의 피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美國 ITC, 캐나다 CIT 및 EC 執行委員會 등의 産業被害 調査·判定에 대해서는 연일 國內言論의 報道가 대단한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 貿易委員會(KTC)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우리는 KTC를 育成·發展시켜 이러한 國際的인 추세에 대처하지 못하는가? 産業被害救濟制度는 先進國만이 가지는 伝家の寶刀란 말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商品들이 外國에 나가서 무수한 輸入規制(産業被害 判定)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KTC와 같은 産業被害救濟機關을 育成해서 事案에 따라 덤핑 등 不公正한 輸出行爲를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國內市場에 와서 잘못된 去來行爲를 恣行하는 外國業體를 制裁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보면 결론은 自明하다. 우리도 外國에서 발달되어온 産業被害救濟制度를 長短期計劃에 맞추어 꾸준히 育成·發展시켜야 하며 이러한 시책이야말로 오늘의 開放化時代에 합치되는 현명한 産業 및 貿易政策의 基本方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産業界에도 우리의 産業被害救濟制

도가 아직도 생소한 면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우리나라 各種 業種別 企業들이 美国, 캐나다, EC 등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ITC, CIT 등 産業被害救濟機關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産業被害救濟制度의 기본내용은 輸出에 종사해 온 대부분의 企業들에게 그렇게 生疎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덤핑, 補助金 支給 등 不公正貿易에 대한 産業被害救濟業務를 財務部(關稅審議委員會)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關聯 国内業界는 不公正輸入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시는 언제든지 提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 나아가 덤핑, 補助金 支給 등을 받지 않고

公正하게 輸入되는 外國商品의 輸入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商工部內에 KTC가 설치되어 수입으로부터 国内産業을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産業界는 이제 輸入自由化를 지연시켜 득을 보겠다는 開途國的 思考方式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기본적으로는 技術開發이나 生産性 향상 등을 통해서 國際競爭力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國際的인 優位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면 輸入으로 인한 国内 産業被害를 救濟해 주는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智慧를 터득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스포츠로 닦은역량

수출로서 꽃피우자